

영등포구의회
제13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·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8. 2. 1.



運 營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·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.

윤동규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·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■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

-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 및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, 일부조항을 법조항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.

■ 개정내용

- 검사위원의 임무는 감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. 다만,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규정을 정함 (안 제5조 제4항)
-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8조 제1항)

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으로 입법내용에 맞게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, 지방의원의 일비 지급기준인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, 감사위원회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예산집행의 지침을 정립하는 등 법적합성 있는 개정 이라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2. 1.

보 고 자 : 김 병 옥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법

제64조 (의결정족수)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78조 (의원의 퇴직)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.

1.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
2.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(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)
3.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

제83조 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132조 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)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2조 (결산 승인)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제83조 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4조 (결산 검사 사항)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세입·세출의 결산
2. 계속비·명시이월비(명시이월비)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
3. 채권 및 채무의 결산
4. 재산 및 기금의 결산
5. 금고의 결산

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지방재정법

제51조 (예산회계의 결산) 세입·세출의 결산은 세입·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,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

1. 세입

- 가. 세입예산액
- 나. 징수결정액
- 다. 수납액
- 라. 불납결손액
- 마. 미수납액

2. 세출

- 가. 세출예산액
- 나. 전년도 이월액
- 다. 예비비사용액
- 라. 전용 등 증감액
- 마.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
- 바. 예산현액
- 사. 지출액
- 아.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
- 자. 불용액

제53조 (재무회계의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「공인회계사법」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5.11>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